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26
----------	------

2024년 6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5월 27일, 박성연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6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박성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등에 비추어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조정하는 한편, 맹견출입 금지 장소로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사항으로 반려동물 상실증후군의 예방·완화 지원을 추가하는 등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상위법령 등에 비추어 조정함(안 제5조제

2항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 2)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추가함(안 제7조의3 제7호의2 신설)
- 3)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반려동물 상실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지원을 추가함(안 제24조제2항제9호의2 신설)
- 4) 구청장에 대한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사항으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사업 실시를 추가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비추어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조정하는 한편, 맹견출입금지 장소로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지원 센터의 기능과 지원사항에 반려동물 상실증후군의 예방·완화 지원을 추가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물보호법」 제8조(시·도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로 위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현행 조례에서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제3항에서 규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하는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내용¹⁾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며, 세부 자격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²⁾의 자격을 따르고 있음.

1)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서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그 사람을 위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의 대표로서 동물보호·동

- 안 제5조제2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6호를 준용하여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전문가 위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안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은 맹견의 소유자등이 맹견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 제22조³⁾제8호에서 동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대상에 「의료법」 제3조제2항⁴⁾에 따른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병원

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4)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에서 환자의 안전과 조산원의 임산부 및 신생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반시민이 맹견⁵⁾과 일반견, 안내견⁶⁾ 등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⁷⁾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⁸⁾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은 공공 장소 등에서 일반견에 비해 폭넓게 허용되고 있음.

- 안 제24조제2항제9호의2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련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으로 소유자등이 겪는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⁹⁾ (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방 및 완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임.
- 최근 반려동물이 떠난 후 많은 소유자등¹⁰⁾이 슬픔, 우울, 불안 등을 겪어

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보통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보조견**을 말한다. 이와 동일한 의미로 맹인 안내견 또는 맹도견(盲導犬)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지만, 청각장애인을 돕는 장애인보조견은 청각도우미견으로 부르며 반려동물 출입금지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7) “국제성모병원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에이블뉴스(2019.8.23.)

8)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의 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등)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 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

10)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¹¹⁾,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인에 대한 교육 및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만, ‘동물복지지원센터’는 「동물보호법」의 ‘동물보호센터’와 같이 주로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의 향상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동물보호에 관한 것과 반려인 및 소유자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도 있을 것임.

- 안 제25조는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사업을 구청장이 수행할 때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나,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그보다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자치구¹²⁾에서 ‘펫로스’ 상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원 주체로 구청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서울시에서 동물보호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위주로 편성되는 상황으로 볼 때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사무관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헬스조선(2023.9.9.), “반려동물 잃은 슬픔, '사별 경험' 만큼 크다는데...”

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운선 교수 연구팀, 반려동물 상실 경험이 있는 13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한 결과, 절반 이상이 반려동물 상실 후 심각한 수준의 상실감과 불안장애, 심각한 불면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ICG(병리적 반응 수준), 우울증 지수(PHQ-9), 범불안장애(GAD-7) 및 불면증 심각도 지수(ISI) 조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상태를 보였다.

12) ‘펫로스(pet-loss)’ 사업 추진 : 강남구(마음치유모임), 서초구(서리풀 무지개 모임), 노원구 등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요지 :

- 상실 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주체를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포괄 명시함으로써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사업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26
----------	------------

제안년월일 : 2024년 6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실 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주체를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포괄 명시함으로써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사업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 골자

- “. 이하 같다” 삭제(안 제24조제2항제9호의2)
-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지원 주체 수정(안 제25조제4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9의2.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죽음
이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의 예방 및 완화 지원

안 제25조제4항 중 “시장은 구청장이”를 “시장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4조(동물복지지원 센터의 설치·운영)</p> <p>① (생략)</p> <p>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9. (생략)</p> <p><u><신설></u></p>	<p>제24조(동물복지지원 센터의 설치·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u>9의2.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방 및 완화 지원</u></p>	<p>제24조(동물복지지원 센터의 설치·운영)</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p> <p>1. ~ 9. (개정안과 같음)</p> <p><u>9의2.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의 예방 및 완화 지원</u></p>
<p>10. ~ 12 (생략)</p>	<p>10. ~ 12 (원안과 같음)</p>	<p>10. ~ 12. (개정안과 같음)</p>

제25조(동물보호업무
의 지원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5조(동물보호업무
의 지원 등)(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구청장이
시민의 반려동물 상
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
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동물보호업무
의 지원 등)(개정안
과 같음)

④ 시장 또는 구청장
은 -----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 또는 생명윤리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7조의3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제24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의 예방 및 완화 지원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4. (생략)</p> <p>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p>	<p>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p style="text-align: right;">-----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p>

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
는 사람

<신 설>

6.·7. (생 략)

③ ~ ⑭ (생 략)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
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1. ~ 7. (생 략)

<신 설>

제24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① (생 략)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9. (생 략)

<신 설>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
또는 생명윤리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7. (현행과 같음)

③ ~ ⑭ (현행과 같음)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제24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반려
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
물의 죽음이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p>10. ~ 12. (생 략) ③ (생 략)</p> <p>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u>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의 예방 및 완화 지원</u></p> <p>10.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	---